

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8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5. 13.

제출자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등 정비

- (당초)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,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분석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
- (개정)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, 성별영향평가 또는 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위원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- 2)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, 규제심사: 원안 동의
- 3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19. 4. 10. ~ 4. 30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고,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”라 한다)”를 “성별영향평가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“(분석평가의 대상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의 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”를 “(특정성별영향평가)로, 같은 조 본문 중 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로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”는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분석평가의 시기)”를 “(성별영향평가의 시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분석평가서 작성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서 작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분석평가서”를 “성별영향평가서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분석평가결과 반영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제도” 를 “성별영향평가제도” 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” 위원회 “라 한다)” 를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” 위원회 “라 한다)” 로 한다.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4조 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 를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0조제3항제3호 중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분석평가업무” 를 “성별영향평가업무” 로 한다.

제16조 제목 “(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” 를 “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업무” 를 “성별영향평가업무” 로, “분석평가책임관” 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7조 제목 “(분석평가 교육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 교육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8조 제목 “(분석평가 위탁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 위탁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성별영향분석평가법</u>」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.“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”란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<u>분석평가</u>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(생략) ② 군수는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(이하 “<u>분석평가</u>”라 한다)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,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군수는 <u>분석평가</u>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(목적) 「<u>성별영향평가법</u>」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<u>성별영향평가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1.“<u>성별영향평가</u>”란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<u>평가</u>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성별영향평가</u>(이하 “<u>성별영향평가</u>”라 한다) ③ <u>성별영향평가</u>

제4조(분석평가 대상) ① 군수는 「 <u>성별영향분석평가법</u> 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<u>분석평가</u> 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 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	제4조(성별영향평가 대상) ① 「 <u>성별영향평가법</u> 」 성별영향평가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생략)
1. ~ 3 (생략)	1. ~ 3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<u>분석평가</u> 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4.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<u>성별영향평가</u>
제5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<u>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</u> 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<u>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</u> 의 심의·조정을 거쳐 <u>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</u> 의 대상을 선정한다.	제5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<u>특정성별영향평가</u>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특정성별영향평가:
제6조(분석평가의 시기)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<u>분석평가</u> 를 실시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	제6조(성별영향평가의 시기) <u>성별영향평가</u> :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분석평가서 작성) 군수가 법	제7조(성별영향평가서 작성)
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<u>분석평가</u>	<u>성별영향평가</u>
<u>서</u>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	<u>서</u>
되어야 한다.	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분석평가결과 반영) 군수는 <u>분</u>	제8조(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) <u>성별</u>
<u>석평가</u> 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	<u>영향평가</u>
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	
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	
노력하여야 한다.	.
제9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	제9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
및 기능)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	기능) ①
제1항에 따라 <u>분석평가</u> 제도의 운	<u>성별영향평가</u>
영 등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	
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<u>성별영</u>	<u>성별영향</u>
<u>향분석평가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	<u>평가위원회</u>
한다)를 둔다.	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	②
심의·조정한다.	.
1. 대상정책의 선정 등 <u>분석평가</u>	1. <u>성별영향평가</u>
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	
2. <u>분석평가</u>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	2. <u>성별영향평가</u>
에 관한 사항	
3. <u>분석평가</u> 결과와 성인지(性認	3. <u>성별영향평가</u>
知)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	
4. 제5조에 따른 <u>특정성별영향분석</u>	4. <u>특정성별영향평가</u>
<u>평가</u>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	

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. (생 략) 제10조(구성) ① ~ 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 ~2 (생 략) 3. <u>분석평가</u>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(간사) ① (생 략) ② 간사는 <u>분석평가업무</u>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. 제16조(<u>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</u>)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<u>분석평가업무</u> 담당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<u>분석평가책임관</u>으로 지정한다. 1. <u>분석평가</u>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. <u>분석평가</u>의 실시 및 <u>분석평가서</u>의 작성에 관한 사항 3. <u>분석평가결과</u>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4. (생 략) 5. <u>분석평가</u> 교육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<u>분석평가</u>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<u>분석평가</u>에 관한 사항 제17조(<u>분석평가 교육</u>) ① 군수는 <u>분석평가</u>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	----- 5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제14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성별영향평가업무</u> ----- 제16조(<u>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</u>) ① <u>성별영향평가업무</u> <u>성별영향평가책임관</u> ----- 1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2. <u>성별영향평가</u> <u>성별영향평가서</u> ----- 3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4. (생 략) 5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6. <u>성별영향평가</u> <u>성별영향평가</u>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제17조(<u>성별영향평가 교육</u>) <u>성별영향평가</u>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
---	---

른 <u>분석평가</u>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<u>분석평가</u> 업무와 관련 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<u>분석평</u> <u>가</u>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. 제18조(<u>분석평가 위탁</u>)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한 효율적, 전문적인 <u>분석평가</u>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, 단체 등에 <u>분석평가</u>에 관한 사무를 위 탁할 수 있다.	<u>성별영향평가</u>..... ② <u>성별영향평가</u>..... <u>성별영향평</u> <u>가</u>..... 제18조(<u>성별영향평가위탁</u>)..... <u>성별영향평가</u>..... <u>성별영향평가</u>.....
---	--

□ 성별영향평가법

부 칙 <법률 제15545호, 2018. 3. 27.> 부칙보기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)”를 “(성별영향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·평가”를 “평가”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